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배분 대상에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 추가〉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33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법정배분 대상에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 추가 및 배분 비 율 상향(안 제23조)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함.

반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복권기금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231호)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23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법정배분 대상에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 추가 및 배분 비율 상향(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7</u>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 - <신설> - <신설>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현행과 같음) - <u>암관리기금</u> - <u>희귀질환관리기금</u>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 등에 배분¹⁾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의 배분 및 용도]

(단위: 억원)

구분	2025년도 계획액	용도
법정배분사업	11,051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공익사업	21,199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추가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현행 35%에서 37%로 상향하려는 것임.

[암관리기금(신설) 개요(「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45조의2)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을 설치
기금의 조성(재원) (안 제45조의3)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안 제45조의4)	1. 암검진사업의 지원 2.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3.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4.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암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희귀질환관리기금(신설) 개요(「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20조의2)	희귀질환검진, 희귀질환환자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설치
기금의 조성(재원) (안 제45조의3)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안 제45조의4)	1. 희귀질환검진사업의 지원 2. 희귀질환환자의 의료비 지원 3. 희귀질환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희귀질환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4. 희귀질환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희귀질환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추가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현행 35%에서 37%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첫째,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현재 암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²⁾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³⁾하고 있으며, 「암관리법」⁴⁾에 따라 ‘국가암빅

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3)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등 1,338개의 희귀·중증난치질환이 대상임.(2025년 기준)

4)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

데이터구축 사업’,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운영 지원 사업’ 등이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암 연구·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국가암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동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과다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가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질병코드가 없거나 질병명 및 진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⁵⁾.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역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외에 「희귀질

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2. 암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 연구」, 2016.12.

헬스경향, “희귀난치질환자, 고가 치료비에 두 번 운다”(2024.12.27.) 등

환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6)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을 별도로 설치한다면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신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둘째,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추가할 경우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재원 및 희귀질환검진, 희귀질환환자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연구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에 기여할 것임.

복권판매액 증가로 복권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

-
- 6)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이하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홍보
 5.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질환자

에 따라 법정배분기관·기금에 배분되는 금액도 점차 증가하여 2025년 계획 기준 1조 1,051억원임.

[2020년 ~ 2025년 복권기금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규모	65,350	71,941	76,412	78,729	84,354	88,685
법정배분	7,292	8,103	9,551	10,338	10,402	11,051
공익사업지원	15,263	17,972	19,949	20,109	20,801	21,199
여유자금운용	4,030	4,582	963	1,696	2,074	1,554
기타	38,765	41,284	45,949	46,586	51,077	54,881

주: 2020년~2024년은 결산 기준, 2025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현행과 같이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 한 상태에서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기금 등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복권수익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배분 비율을 37%로 상향함으로써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정 당시 기존 10개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30%”를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하였으나, 이후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⁷⁾이 복권 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추가되면서(10개 기관 → 11개 기관),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 또한 복권수입금의 “35%”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⁸⁾

다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복권기금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체수입이 「복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관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⁹⁾,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별 정률 배분체계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

7)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8) 다만, 복권법 제정 당시 법정배분기관이었던 ‘주택도시기금’이 2016년 법정배분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11개 기관 → 10개 기관), 배분비율은 동일하게 35%로 유지되는 중임.

9) 감사원,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2021. 5.

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집행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이와 같이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을 법정배분기관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배분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정배분비율을 37%로 상향할 경우 그만큼 공익사업 지원이 감소하게 됨.

현행 「복권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법정배분기관·기금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복권수익금의 65% 및 기타수입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 복권수익금 배분체계]

(단위: %, 백만원)

복권수익금	35%	법정배분사업	<법정대상기관>		<배분비율>	<'23결산>	<'24수정>	<'25계획>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12.583	109,957	125,055	137,447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10.371	91,450	91,954	92,044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5.310	64,400	63,513	61,699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356	78,907	72,752	82,620
			국 가 유 산 보 호 기 금		14.286	158,339	152,611	144,815
			지 방 자 치 단 체		17.267	175,329	169,863	190,639
			제 주 개 발 특 별 회 계		17.267	176,999	179,600	190,825
			사 회 복 지 공 동 모 금 회		4.286	47,205	41,697	47,401
			산 림 환 경 증 진 자 금		5.846	72,576	72,967	77,528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6.428	58,664	70,138	80,127
			<소계>		100.0	1,033,826	1,040,150	1,105,145
			기타수입	65%	공익사업	<공익사업 분야>	<사업기관>	<'23결산>
저소득 주거안정	주 택 도 시 기 금	450,040				450,040	450,040	
국가유공자 복지	보 훈 기 금	22,919				22,076	21,553	
저소득·소외계층	양 성 평 등 기 금	630,008				740,303	776,926	
	청 소 년 육 성 기 금	149,473				149,596	151,259	
	기 후 대 응 기 금	95,646				108,333	107,593	
	보 건 복 지 부	91,600				113,397	104,536	
	고 용 노 동 부	2,054				-	-	
	법 무 부	-				-	2,161	
	교 육 부	115,386				32,413	25,825	
	금 융 위 원 회	212,484				211,969	196,378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진흥기금	235,674				248,786	267,707	
	영 화 발 전 기 금	-				5,400	4,497	
재해·재난 구호	응 급 의 료 기 금	5,635	1,610	6,440				
	행 정 안 전 부	-	-	5,000				
<소계>		2,010,919	2,083,923	2,119,915				
<총 계>		3,044,745	3,124,073	3,225,060				

※ 자료: 기획재정부

법정배분비율이 35%에서 37%로 상향될 경우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지원액은 복권수익금의 63% 및 기타수입금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¹¹⁾, 이 경우 복권수입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던 다양한 공익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¹²⁾

추가적으로, 「복권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³⁾ 법정배분 대상 추가 시 별표에 용도를 규정하여야 하나, 개정안에는 용도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암관리기금’ 및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각 기금을 신설하여 암·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1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2호)

11) 법정배분비율을 2%p 상향할 경우, 공익사업 배분액 중 약 63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기준)

12)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도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법정배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감사원 등에서 재정운용의 칸막이화에 따른 경직성·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상향 시 한부모양육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의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 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 여 100분의 20의 범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u>100분의 37</u> ----- -----. ----- -----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암관리법」에 따른 암관리기 금
<신설>	13.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 귀질환관리기금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참고 1

현행 법정배분기관 현황

법정배분기관	배분비율 (35% 기준)	용도
1. 과학기술진흥기금	12.583% (4.404%)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
2. 국민체육진흥기금	10.371% (3.630%)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 -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
3. 근로복지진흥기금	5.310% (1.859%)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4.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356% (2.225%)	- 중소기업 창업지원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 - 산업기반 조성
5. 국가유산보호기금	14.286% (5.000%)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등
6. 지방자치단체	17.267% (6.043%)	- 지자체 문화·예술·복지 - 지역개발사업 -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 업특별회계	17.267% (6.043%)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등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86% (1.500%)	사회복지사업
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5.846% (2.046%)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조성, 산림복지진흥 사업 등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428% (2.250%)	국가유공자 진료, 건강관리, 보호, 복지시설 운영 등
계	100% (35%)	

